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2025. . .
제출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제27조는 최저거래금액에 대한 조항이므로 시행규칙의 위반 행위별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현행과 같이 두는 것이 바람직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27조제2항을 현행과 같이 한다.
 - 현행: 농산물의 계절별 출하시기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이라함은 매분기별 총거래 금액을 3개월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개정안: 제1항의 월간 최저거래금액 산정 및 검사 주기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제56조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 수정안: (현행과 같음)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한다.

안 제27조제2항을 현행과 같이 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조례는 「농수산물 --- ----- ----- ----- ----- --- 구미시 농산물 도매시장의 운영 관리----- -----.</p>	<p>제1조(목적) (개정안과 같음)</p>
<p>제2조 (도매시장의 명칭·장소 및 면적) 농산물도매시장의 명칭·장소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p>	<p>제2조(도매시장의 명칭·장소 및 면적)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 ----- -----.</p>	<p>제2조(도매시장의 명칭·장소 및 면적) (개정안과 같음)</p>
<p>제3조 (거래품목) 농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거래품목</p>	<p>제3조(거래품목) 도매시장----- ----- -----</p>	<p>제3조(거래품목) (개정안과 같음)</p>

은 다음과 같다.

1. 청과부류 : 과실
류, 채소류, 산나
물류, 목과류, 버
섯류, 서류, 인삼
류 중 수삼 및 유
지작물류와 두류
및 잡곡중 신선한
것.

2. 기타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과
이를 단순 가공한
물품으로서 구미
시장(이하 “시
장” 이라 한다)
이 지정하는 품목

제5조 (도매시장 공
판장의 업무규정
적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
에 관한 법률」(이
하 “법”이라 한
다)제46조 및 시행
규칙 제40조의 규
정과 관련하여 도
매시장공판장(이하

---.

1. -----

----- 잡곡 중 -
-----.

2. 그 밖에 -----

----- “시장” 이

제5조(도매시장 공판
장의 업무규정 적
용) -----

----- 한다) 제46조 -----

----- “공판
장” 이-----

1. (개정안과 같
음)

2. (개정안과 같
음)

제5조(도매시장 공판
장의 업무규정 적
용)(개정안과 같
음)

“공판장 “ 이라
한다)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제6조(적정수) 도매
시장법인(공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의 상한수는 다
음과 같다.

1. (생 략)

제7조(지정조건) 시
장은 도매시장법인
지정시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자격, 자본
금 규모, 시설사용
계약, 보증금, 운
전자금,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등
의 지정조건을 정
할 수 있다.

제8조(지정절차) ①
도매시장법인의 지
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

-.

제6조(적정수) -----

----- 상
한 수-----.

1. (현행과 같음)

제7조(지정조건) ---
----- 지
정 시 -----

----- 시설 사
용계약-----

----- 보험 가입 등-----
-----.

제8조(지정절차) ①

제6조(적정수) (개정
안과 같음)

1. (개정안과 같
음)

제7조(지정조건) (개
정안과 같음)

제8조(지정절차) (개
정안과 같음)

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사업개시 예정
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
활동계획, 경매사
확보계획, 농산물
판매계획, 자금운
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등
을 포함한다)

6. (생략)

② (생략)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
매시장법인을 지정
할 때는 제6조의 규
정에 의한 도매시
장법인의 적정수
범위안에서 지정하
며, 지정받은 도매

----- 각 호-----

1. ~ 4. (현행과
같음)

5. 사업 개시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범위 안-----

1. ~ 4. (개정안과
같음)

5. (개정안과 같
음)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
음)

시장법인에게는 별
지 제2호서식의 지
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23조제3
항의 요건을 확인
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 받을 수 있다.

제9조(재지정) ①도
매시장법인은 제7
조 및 제8조의 규정
에 의하여 도매시
장법인으로 지정을
받고 지정유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재
지정을 받고자할
때에는 지정 유효
기간 만료 30일전
까지 제8조의 규정
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도매시장법인 신청
서를 검토하고 직

-----.

④ -----

----- 제출받을 -----
-----.

제9조(재지정) ① --

----- 지정 유효
기간 -----
----- 받고자 할 -

- 30일 전-----

-----.

② -----

----- 지정

④ (개정안과 같
음)

제9조(재지정) (개정
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
음)

전 지정유효기간
 동안의 도매시장법
 인의 중앙평가 결
 과를 토대로 하여
 지정 유효기간을 5
년이상 10년 이하
 의 범위내에서 지
 정하여 도매시장법
 인 지정서를 교부
 할 수 있다.

유효기간 -----

 ----- 5년
이상 ----- 범
위 내-----

 -----.

제10조(임원의 요건)

①도매시장법인은
 그 임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부류의 도
 매업무를 효과적
 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도매
 시장 또는 공판장
 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
 는 업무집행 담당
 임원이 2인이상
 있을 것

2. 임원중 금고이

제10조(임원의 요건)

① -----

 -----.

1. -----

 ----- 2
년 이상 -----

 - 담당 임원이 2
명 이상 -----

2. 임원 중 금고 이

제10조(임원의 요건)

(개정안과 같음)

1. (개정안과 같
 음)

2. (개정안과 같

<p>상의 실행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없을 것</p>	<p>상----- ----- ----- ----- ----- ----- ----- ----- ----- -----</p>	<p>음)</p>
<p>3. <u>임원중</u>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u>피성년후견인</u>이 없을 것</p>	<p>3. <u>임원 중</u> ----- ----- ----- <u>피성년후견인</u> 또는 <u>피한정후견인</u>----- -----</p>	<p>3. (개정안과 같음)</p>
<p>4. <u>임원중</u> 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자가 없을 것</p>	<p>4. <u>임원 중</u> ----- ----- ----- ----- ----- ----- -----</p>	<p>4. (개정안과 같음)</p>
<p>② 삭 제 ③ 도매시장법인은 <u>해당임원이</u> 제1항</p>	<p>③ ----- <u>해당 임원</u>-----</p>	<p>③ (개정안과 같음)</p>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는 그 임원을 지체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 되었을 때-----
--- 지체 없-----
-----.

제11조(자본금 규모) 도매시장법인의 자본금의 최소규모는 다음과 같다. 단, 공판장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11조(자본금 규모) -----
-- 최소 규모-----
-----.
- 대해서-----
-----.

제11조(자본금 규모) (개정안과 같음)

1. 청과부류 : 20억 원 이상

1. ----- 10억 원 이상

1. (개정안과 같음)

제12조(보증금 납부) ①도매시장법인은 위탁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제12조(보증금 납부) ① ----- 위탁 출하자-----

업무 수행-----

30일 이내-----

-----.

제12조(보증금 납부) (개정안과 같음)

하대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보증금
부족이 생겼을 때
에는 시장 또는 정
산창구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기한내
부족액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도매시장법인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
금을 납부하지 아
니하였을때에는 납
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가 끝
날때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다.

⑤ (생략)

제13조(보증금 반환)
시장 또는 정산창
구의 대표자는 도
매시장법인이 그
자격을 상실한 날
부터 60일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여

----- 기한
내-----

-----.

④ -----

-- 아니하였을 때--

끝날 때-----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보증금 반환)

----- 60일 이
내-----
-----.

④(개정안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보증금 반환)
(개정안과 같음)

야 한다. 다만, 출
하자 또는 정산창
구에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판매
대금을 정산한 후
에 이를 반환한다.

-----.

제14조(운전자금 확보) ①도매시장법
인이 확보하여야
할 운전자금은 전
년도 연간 거래금
액(전년도 거래금
액이 없는 경우에
는 당해연도 사업
계획에 의한 연간
예상거래액을 말한
다)의 1000분의 15
이상으로 한다.

제14조(운전자금 확보) ① -----

당해 연도 -----

- 15 이상-----.

제14조(운전자금 확보) (개정안과 같
음)

②도매시장법인은
매분기별 운전자금
확보현황을 다음달
5일까지 증빙서류
(금융기관의 잔액
증명서)를 첨부하
여 시장과 정산창

② ----- 매
분기별 운전자금
확보 현황을 다음
달 -----

② (개정안과 같
음)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한다.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장부

2. ~ 5. (생략)

②제1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될 경우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같음할 수 있다.

③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의 장부 중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거래금액 및 판매원표의 사본 또는 그 내용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도매시장법인의 관리) ① (생략)

②시장은 필요시

----- 준비한다.

1. ----- 지출 내역 -----

2. ~ 5. (현행과 같음)

② ----- 출력 결과-----
-----.

③ -----

----- 거래 물량-----

-----.

제16조(도매시장법인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1. (개정안과 같음)

2. ~ 5.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제16조(도매시장법인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도매시장법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
행 상황을 보고하
게 할 수 있다.

제17조(겸영업무) ①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35조제4항 및 시
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겸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
호서식에 의거 보
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필요시
도매시장법인에게
겸영업의 추진상
황에 대해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휴·폐업 신
고) ①도매시장법
인은 제4조의 규정
에 정한 휴업일이
외의 날에 휴업하
고자 하거나 영업
을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그 10일전

--- 업무 집행 ---

-.

제17조(겸영업무) ①
도매시장법인은 --

---- 의거 시장에
게 보고----.

② -----

--- 추진 상황 ---

-.

제18조(휴·폐업 신
고) ① -----

-- 휴업일 이외 ---

----- 10일 전 -----

음)

제 17 조 (겸 영 업 무)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
음)

제18조(휴·폐업 신고)
(개정안과 같음)

까지 별지 제4호서
식의 휴·폐업신고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9조 (경매사의 행
위금지) 경매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
를 하여서는 안된
다.

1. ~ 3. (생략)

4. 경매순서 조작

5. 출하자 또는 구
매자로부터의 금
품수수행위

6. 경매후 경락가
격 조작 또는 낙
찰자를 조작하는
행위

7. 기타 법령, 도매
시장운영관리조
례 또는 이에 의
하여 발하는 시장
의 지시를 위반하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경매사의 행
위금지) -----

-----.

1. ~ 3. (현행과
같음)

4. 경매 순서 -----

5. -----
----- 금품 수
수 행위

6. 경매 후 -----

7. 그 밖의 ----- 이
조례 -----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경매사의 행
위금지) (개정안과
같음)

1. ~ 3. (개정안과
같음)

4. (개정안과 같음)

5. (개정안과 같음)

6. (개정안과 같음)

7. (개정안과 같음)

는 행위

제20조 (경매사의 수) 도매시장내 거래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각 도매시장법인이 최소한도로 확보하여야 하는 경매사 수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연간거래규모는 전년도 거래 실적(전년도 거래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의한 연간 예상거래액을 말한다)에 의한다.

제21조 (시설사용면적결정) ①도매시장법인의 시설사용면적은 거래규모, 시설여건, 도매시장법인 평가결과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며 필요시

제20조(경매사의 수) 도매시장 내 -----

----- 확보하
여야 하는 -----
----- . -
--- 연간 거래규모

----- 당해 연도

예상 거래액-----
-----.

제21조(시설 사용면적 결정) ① -----
----- 시설 사용면
적----- 시
설 여건-----
-- 평가 결과 등---

제20조(경매사의 수) (개정안과 같음)

제21조(시설 사용면적 결정) (개정안과 같음)

조정할 수 있다.

② 면적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22조(지정취소)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8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3조(적정수) ① 중도매인의 상한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 법인인 중도매인(이하 "중도매법인"이라 한다) 수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상한수를

-.

② 면적 조정-----

-----.

제22조(지정취소)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지정 또는 승인-----
-----.

제23조(적정수) ① -
----- 상한 수-----
-----.

1. (현행과 같음)

② -----

-----(이하 “중도매법인” 이라 한다)수 등-----
----- 상한 수-----

② (개정안과 같음)

제 22 조 (지 정 취 소)
(개정안과 같음)

제23조(적정수) (개정안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조정할 수 있다.

제24조(허가조건) 시장은 중도매업 허가시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거래금액, 시설사용허가 또는 계약, 보증금 등의 허가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25조(허가절차) ①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중도매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

제24조(허가조건) --
----- 허가
시 -----

- 보증금 등-----

-.

제25조(허가절차) ①

---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

--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제 24 조 (허 가 조 건)
(개정안과 같음)

제 25 조 (허 가 절 차)
(개정안과 같음)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개인인 경우

가. (생략)

나. 은행의 잔고
증명서

2. (생략)

② (생략)

③중도매인은 제23
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의 적정수
범위안에서 허가하
며, 허가 받은 중도
매인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의 중도
매업허가증을 교부
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시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25조제2
항의 요건을 확인
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 받을 수 있다.

제26조(갱신허가) ①

-----.

1. -----

가. (현행과 같
음)

나. ---- 잔고 증
명서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범위 안
에서 허가하며, 허
가받은-----

-----.

④ (현행과 같음)

⑤ -----

----- 제출받을-----
-----.

제26조(갱신허가) ①

1. (개정안과 같음)

가. (개정안과 같
음)

나. (개정안과 같
음)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
음)

④ (현행과 같음)

⑤ (개정안과 같
음)

제 26 조 (갱 신 허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중도매인이 허가 유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중도매업 갱신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허가 유효기간 만료 20일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중도매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중도매업 갱신허가 신청서를 검토하고 직전 허가유효기간 동안의 중도매인 평가결과를 토대로 하여 3년이상 10년 범위내에서 중도매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제27조 (최저거래금액) ①중도매인의

----- 별지 제5호
서식의 중도매업
허가신청서를 시장
에게 -----
-----.

② -----

허가 유효기간 ---
----- 평가 결
과----- 3년
이상 10년 범위 내-

-----.

제27조(최저거래금액) ① -----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제27조(최저거래금액) ① (개정안과

월간 최저거래 금액은 다음과 같다.

②농산물의 계절별 출하시기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이라 함은 매분기별 총 거래 금액을 3개월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제29조(보증금 관리)

①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을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성실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당해 중도매인의 거래대금 미수금 정리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 또는 담보물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 최저거래금액-----

② 제1항의 월간 최저거래금액 산정 및 검사 주기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제56조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제29조(보증금 관리)

① -----

----- 관리 의무-----

----- 정리 이외-----
-----.

② -----

- 변동 사항이 있을 때-----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보증금 관리)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도매시장법인은 보증금을 대여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 (시설사용면적 결정) ①시장은 중도매인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자에게 시설사용면적 배정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②시장은 중도매업의 규모화 및 활성화를 위해 중도매법인에 대해 시설사용 면적 배정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제32조(보조경매 참가자 운영) 중도매인이 본인 또는 대표자외의 자로 하

-----.

③ -----

---- 아니 된다.

제31조(시설 사용면적 결정) ① -----
----- 평가 결과-----
----- 시설 사용면적 배정-----

-----.

② -----

시설 사용면적 배정 등-----
-----.

제32조(보조경매참가자 운영) -----
----- 대표자 외-----

③ (개정안과 같음)

제31조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제32조 (개정안과 같음)

여금 본인 또는 대표자를 대신하여 경매에 참여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보조경매참가자 운영신청서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도매인 본인 또는 대표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단서 신설 2008.06.10.)

- 1. 신병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을 할 경우 그 기간 2.·3. (생략)

제33조 (신고) 중도매인(이하 “중도매법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유

- 1. 신병 치료-----

2.·3. (현행과 같음)

제33조(신고) -----

각 호-----

- 1. (개정안과 같음)
 - 2.·3. (현행과 같음)
- 제33조(신고) (개정안과 같음)

가 발생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2. (생략)

제34조 (중도매인의
경쟁배제 행위금
지) ①중도매인은
도매시장에서의 공
정한 거래형성을
방해하는 개별적
또는 집단적 행위
를 하지 못한다.

② (생략)

③시장은 중도매인
의 조직체가 도매
시장의 건전한 운
영에 기여하도록
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저해하는 행
위를 한 때에는 이
의 개편 또는 필요
한 조치를 강구하
거나 해체를 명할

1.·2. (현행과 같
음)

제34조(중도매인의
경쟁배제 행위금
지) ① -----

거래 형성-----

-----.

② (현행과 같음)

③ -----

마련-----
-----.

1.·2. (현행과 같
음)

제34조(중도매인의
경쟁배제 행위금
지) (개정안과 같
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
음)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상장되지 않은 농산물의 중도매인 거래허가) ① 법 제31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한 상장거래가 적합하지 아니한 농산물, 기타 이에 준하는 농산물의 대상 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2. (생략)

3. 기타 상장거래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해당 농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품목을 취급하고자 하는 중도매인의 상장예외품목 거래

제42조(상장되지 않은 농산물의 중도매인 거래허가) ① ----- 단서 규정-----

----- 각 호-----
--.

1.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

② -----

거래허가 신청서--

제42조(상장되지 않은 농산물의 중도매인 거래허가) (개정안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로 정한다.

제42조의2(중도매인
간 거래 규모의 상
한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중
도매인과 거래한
중도매인은 시장에
게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다음 달 20일까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다른 중도매
인으로부터 구매한
농산물의 품목, 수
량, 구매가격 및 판
매자에 대한 자료
를 통보하여야 한
다.

제44조(미수금의 관
리) ① (생략)

②정산창구는 도매
시장법인의 거래실
적 및 미수금내역
등을 매월 마지막

제42조의2(중도매인
간 거래 규모의 상
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분기 만료일-----

제44조(미수금의 관
리) ① (현행과 같
음)

② -----

미수금 내역 등-----

제42조의2(중도매인
간 거래 규모의 상
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
음)

제44조(미수금의 관
리) ① (현행과 같
음)

② (개정안과 같
음)

결제일 익일을 기
준하여 익월 5일까
지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45조(경매참가거부
및 담합금지등) ①
도매시장법인은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
되는 중 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이외에
는 경매참가를 거
부하거나 경매참가
시 차별대우를 하
여서는 아니된다.

1. 예치한 보증금
또는 담보이상으
로 거래한도를 초
과하는 자

2. 업무정지중인
자

3. (생략)

②중도매인은 매매
참가인의 거래참가
를 방해하거나 정
당한 사유 없이 집

③ (현행과 같음)

제45조(경매참가거부
및 담합금지등) ①

----- 매매
참가인 이외-----
경매 참가-----
경매 참가 시 차별
대우----아니 된
다.

1. -----
- 담보 이상으로
거래 한도-----

2. 업무정지 중--

3. (현행과 같음)

② -----
---- 거래 참가---

③ (현행과 같음)

제45조(경매참가거부
및 담합금지 등)
(개정안과 같음)

1. (개정안과 같
음)

2. (개정안과 같
음)

3.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
음)

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은 담합하여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은 고의 또는 집단으로 미수금 납입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46조(대량입하품 표준규격품등의 우대) ①시행규칙 제 30조의 규정에 의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우선 판매 실시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1. ~ 3. (생략)

----- 아니 된다.

③ -----

-- 가격 형성-----
----- 아니 된다.

④ -----

----- 아니 된다.

제 46조(대량입하품 표준규격품등의 우대) ① -----

- 각 호-----

- 실시 등 -----
-----.

1. ~ 3. (현행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④ (개정안과 같음)

제46조 (대량입하품 표준규격품등의 우대) (개정안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시장법인은 별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승인을
받아 도매시장법인
이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외의 자
에게, 판매를 한 경
우 별지 제21호서
식의 판매결과 보
고서를 판매종료 3
일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8조(경매 또는 입
찰의 방법) ① 도매
시장법인의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
은 다음 각호와 같
다.

1. 전자식 : 전광판
에 출하자명·출
하지역·품목·
수량·품위등급
등이 표시되면 경
매 참가인은 응찰
기를 조작하여 경

② -----

----- 매매참
가인 외-----

----- 판매 종료 3일
이내-----
-----.

제48조(경매 또는 입
찰의 방법) ① -----

----- 각
호-----.

1. -----

② (개정안과 같
음)

제48조(경매 또는 입
찰의 방법) (개정
안과 같음)

1. (개정안과 같
음)

락 희망가격을 제
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 응찰자
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경락후
전광판에는 낙찰
자 번호 · 낙찰단
가 등이 표시되어
야 함.

2. 거수수지식 : 농
수산물 표준경매
수지도에 의거 경
매참가인이 경락
희망가격을 손가
락으로 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
격을 제시한 자에
게 경락시키는 방
법이며, 이 때 경
매참가인은 숫자
를 표시한 손가락
을 어깨높이이상
으로 올려야 하며
경매사는 경락가
격을 출하자등 이
해관계자가 쉽게

---- 경락 후 ----

-----.

2. -----

----- 이때 -----
----- 어
깨 높이 이상-----

----- 출하
자 등 -----

-----.

2. (개정안과 같
음)

기입하여 제출하고, 입찰이 끝나면 최고가격을 제시한 낙찰자와 낙찰가격을 즉시 결정 후 공개하여야 함.

-----.

② 제1항의 경매 또는 입찰에 있어서 출하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서면으로 거래성립 최저가격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가격미만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

----- 가격 미만-----
----- 아니 된다.

② (개정안과 같음)

③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거래방식으로 전자거래를 하려면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
--- 도매시장법인
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③ (개정안과 같음)

제49조(경매절차) 경매절차는 다음과 같다. 다만, 도매시장내 거래여건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차상경매등 경매절차를 달리할 수 있다.

1. 반입물품의 하차 및 선별(출하주별 · 품목별 · 등급별 · 갯수별로 선별 진열)

2. · 3. (생략)

4. 경매실시
가. · 나. (생략)

다. 견본제시(포장품은 등급별로 포장해제, 미포장품은 진열)

라. ~ 바. (생략)

제49조(경매절차) --

-. --- 도매시장내
거래 여건 등-----

----- 차
상경매 등 -----
-----.

1. 반입 물품-----

-

2. · 3. (현행과 같음)

4.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견본 제시---

-- 포장 해제-

라. ~ 바. (현행과 같음)

제 49 조 (경 매 절 차)
(개정안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 3. (현행과 같음)

4.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개정안과 같음)

라. (개정안과 같음)

5. 판매원표 작성
(경락자 및 경락
단가, 금액 기재)

제50조(품목별 경매
시각 및 경매장소)

① (생략)

②시장은 시장상
황, 계절변동등에
따라 품목별 경매
개시 시각 및 경매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51조(경락물품의
반출) ①중도매인
은 경락 받은 물품
을 정해진 방법에
따라 당일 처분함
을 원칙으로 하며,
매잔품도 3일이내
에는 도매시장 밖
으로 반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만, 불가피한 사유
로 인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이내에 반출할

5. -----
----- 경락 단가-

제50조(품목별 경매
시각 및 경매장소)

① (현행과 같음)

② --- 시장 상황,
계절변동 등-----

-----.

제51조(경락물품의
반출) ① -----

----- 3일 이
내-----

10일 이내-----
-----.

5. (개정안과 같
음)

제50조(품목별 경매
시각 및 경매장소)

①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
음)

제51조(경락물품의반
출) (개정안과 같
음)

수 있다.

②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중도매인에 대하여 경매참여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52조(판매원표 관리) ①·② (생략)

③판매원표는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시행규칙 제32조의 3제4항에 따라 판매원표를 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원본을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도매시장법인은 판매 일자순으로 판매원표를 보관 관리(문서, 디스켓, CD등) 하여야 한다.

⑤도매시장법인은

② -----

-- 경매 참여-----

-.

제52조(판매원표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시행
규칙 제37조-----

----- .

④ -----

----- CD 등 -----
----- .

⑤ ----- 경

② (개정안과 같음)

제52조(판매원표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④ (개정안과 같음)

⑤ (개정안과 같음)

경매이외의 방법으로 판매한 물품의 판매원표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3조(정산창구의 운영방법 및 관리)

① (생략)

②시장은 정산창구로 하여금 대금결제 내역 또는 도매시장법인의 예치자금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③시장은 대금결제 능력을 상실하여 출하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도매시장법인에 대해서는 수탁 또는 매수를 제한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4조(대금결제) ① 도매시장법인은 제53조의 정산창구를

매이외-----

-----.

제53조(정산창구의 운영방법 및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예치 자금 -----

-----.

③-----

----- 제
한하는 등 -----
-----.

제54조(대금결제) ① -----

음)

제53조(정산창구의 운영방법 및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제54조(대금결제) ① (개정안과 같음)

통하여 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하대금 결제용 보증금을 납부하고 운전자금을 확보한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에게 농산물의 출하대금을 직접 결제할 수 있다.

②도매시장법인은 즉시 매매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대금결제에 관하여 출하자와 특약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③ (생략)

④시장은 제3항의 출하자의 청구가 있을시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에 보증금을 납부한 도매시장법인

-. -----

출하대금결제용 --

② -----
- 매매 대금-----

③ (현행과 같음)

④ -----
----- 있을
시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개정안과 같음)

도매시장법인 및
정산청구의 대표자
로 하여금 일정금
액이상의 이행보증
보험증권(손해보험
가입증서등 포함)
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을
한 도매시장법인에
대하여는 지정허가
시 우대할 수 있다.

제57조(표준송품장의
양식 및 관리) ①·
② (생략)
③시장은 도매시장
법인 또는 상장예
외품목 취급 중도
매인으로 하여금
표준송품장의 확대
사용을 위해 필요
한 조치를 할 수 있
다.

제58조(지체상금의
가산 방법) 시장은

--- 일정 금액 이상
----- 보험 증
권----- 가입증
서 등 -----
-----.

② -----
- 보험 가입-----

-- 지정 허가 시 --
-----.

제57조(표준송품장의
양식 및 관리)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확
대 사용-----

-.

제58조(지체상금의
가산 방법) -----

② (개정안과 같음)

제57조(표준송품장의
양식 및 관리)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제58조(지체상금의
가산 방법) (개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에서 미지급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때 때에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결제기한 경과일로부터 1일에 1000분의 1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판매한 농산물이 밀수 또는 절취된 물품이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시장으로부터 대금지급의 유예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상법상의 이자

안과 같음)

이때

에 해당하는 지체
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60조(출하자 손실
보전금) ①출하자
는 위탁한 농산물
이 특별한 이유 없
이 그 날의 평균 경
락가격보다 현저하
게 낮은 가격으로
낙찰된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하
여 판매일로부터 1
0일이내에 도매시
장법인에게 출자손
실보전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②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출하자 손실보
전금(이하 “보전
금”이라 한다) 지
급에 대비하여 전
년도 위탁상장수수
료액(전년도 상장
수수료 수입액을

제60조(출하자 손실
보전금) ① -----

----- 그날-----

----- 10일 이내-----

-----.

② -----

제60조(출하자 손실
보전금) ① (개정
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책정된 상장수수료 수입예상액)의 100분의 5이상을 별도로계정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보전금은 출하자 손실보전의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④ (생략)

제61조(유통정보 공개등 신용관리) <신설>

수입 예상액)-----
----- 별도
계정-----

-- 손실보전 이외-

-.

③·④ (현행과 같음)

제61조(유통정보 공개등 신용관리) ①
도매시장법인은 법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매시장의 게시판이나 정보통신망에 공시하여야 한다.

1. 거래일자별·품목별 반입량 및 가격정보
2. 주주 및 임원의 현황과 그 변동사

③·④ (현행과 같음)

제61조(유통정보 공개등 신용관리) ① (개정안과 같음)

	<u>항</u>	
	3. <u>겸영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 내용</u>	
	4. <u>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u>	
① 도매시장법인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거 거래량 및 <u>가격</u>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 ----- ----- <u>가격</u> 등 -----.	② (개정안과 같음)
②·③ (생략)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62조(시장사용료)	제62조(시장사용료)	제62조(시장사용료)
①·② (생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사용료는 도매시장법인의 거래금액과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도매시장 사용료의 도매시장법인별 <u>배분</u> 방법은 다음 <u>각 호</u> 와 같다.	③ ----- ----- ----- ----- ----- <u>배분 방법</u> ----- <u>각 호</u> -----.	③ (개정안과 같음)

1. 시장사용료 총액의 2분의 1은 각 도매시장법인이 사용하는 시설의 면적비율에 따라 산출 부과한다.

2. (생략)

④도매시장법인이 사용하는 시설은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한 도매시장 시설기준중 필수시설, 부수시설로 한다. 다만, 시설사용료 또는 대부료 부과대상 시설은 제외한다.

제63조(시설사용료)

①도매시장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은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별표 2의 필수시설중 저온창고 및 부수시설중 중도매인

1. -----

----- 면적 비
율-----
-----.

2. (현행과 같음)

④ -----

-. -----
----- 부과
대상 -----
-.

제63조(시설사용료)

① -----

1. (개정안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④ (개정안과 같음)

제63조(시설사용료)

① (개정안과 같음)

사무실 및 농산물
품질관리실을 제외
한 시설로 하며, 연
간 시설사용료는
당해 시설의 재산
가액의 1000분의 5
0(중도매인 점포의
경우에는 재산가액
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구체적 납부
방법 등에 대하여
는 구미시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
다.

②·③ (생략)

제68조(반입물품의
제한) 도매시장법
인은 도매시장에
반입된 물품중 법
령으로 소지나 거
래가 제한되거나
위생상 유해하다고
정한 물품에 대하
여는 이의 판매, 수

납부 방법 -----
---- 「구미시 공
유재산관리 조례」
-----.

②·③ (현행과 같
음)

제68조(반입물품의
제한) -----

물품 중 -----

-----.

②·③ (현행과 같
음)

제68조(반입물품의
제한) (개정안과
같음)

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제69조(거래단위) 도
매시장에서의 거래
단위는 중량에 의한
다. 다만, 시장은
중량단위로 거래하
기가 심히 어려운
물품에 대하여는
거래관습에 따라
적당한 단위를 사
용하여 거래하게
할 수 있다.

제70조(시장관리운영
위원회) ①·②
(생략)
③위원회의 주요기
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매시장의 거
래제도 및 거래방
법의 선택에 관한
사항
2. 수수료, 시장
사용료, 하역비
등 제반 비용결

제69조(거래단위) --

- 중량에 의한다. -
----- 중량 단
위-----

---- 거래 관습----

-----.

제70조(시장관리운영
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각 호-----
-----.
1. ----- 거래
제도 -----

2. -----
---- 하역비 등 제
반 비용 결정----

제 69 조 (거 래 단 위)
(개정안과 같음)

제70조(시장관리운영
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정에 관한 사항	-----	
3.·4. (생략)	3.·4. (현행과 같음)	3.·4. (현행과 같음)
5. 정가·수의매매 등 거래농산물의 매매방법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	5. ----- <u>거래 농산물</u> ----- -----	5. (개정안과 같음)
6. (생략)	6.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7.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u>그 밖에</u> ----- ----- -----	7. (개정안과 같음)
제70조의2(거래분쟁조정위원회) ① 시장은 <u>도매시장내 농수산물의 거래당사자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u> 을 조정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2에 따라 <u>거래분쟁</u>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제70조의2(거래분쟁조정위원회) ① -- -- <u>도매시장 내 농수산물의 거래 당사자 간</u> ----- ----- ----- ----- ----- ----- <u>거래 분쟁</u> ----- ----- ----- -----.	제72조의2(거래분쟁조정위원회) ① (개정안과 같음)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생략)

③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과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업무소관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간사는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④ ~ ⑦ (생략)

제71조(농산물 안전성 검사) ① 시장은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② (현행과 같음)

③ -----

1명-----.
----- 실
국장-----
-- 중에서 호선하
고, 간사는 업무 담
당 팀장이 ----.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71조(농산물 안전성 검사) ① -----

----- 유해
물질-----

-----.

② -----
----- 검사 결과

② (현행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71조(농산물 안전성 검사)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결과 기준 미달로
판정되면 기준 미
달품 출하자에 대
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
한할 수 있다.

1. ~ 3.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출
하제한을 하는 경
우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 미달품
발생사항과 출하제
한 기간 등을 해당
출하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
다.

제72조 (부속업소의
제한) 도매시장안
에는 도매시장법

----- 출하자
(다른 도매시장 개
설자로부터 안전성
검사 결과 출하제
한을 받은 자를 포
합한다)--- 해당
농산물과 같은 품
목의 농산물을 도
매시장-----.

1. ~ 3. (현행과
같음)

③ -----

-- 검사 결과-----

-----.

제72조 (부속업소의
제한) 도매시장 안

1. ~ 3. (현행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제72조(부속업소의제
한) (개정안과 같
음)

인, 중도매인과 거래관계자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익업소 및 부대업소 이외의 업소를 둘 수 없다. 단, 시장이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3조(부속영업의 관리) 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또는 부속업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74조(시설의 용도 지정등) ①시장은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부속업자가 사용할 시장

----- 거래 관계자-----
----- 편익업소 및 부대업소 이외-----
----- . -----

----- .

제73조(부속영업의 관리) -----

부속업자-----
----- .

제74조(시설의 용도 지정등) ① -----

----- 부속업자-----

제73조(부속영업의 관리) (개정안과 같음)

제74조(시설의 용도 지정등) ① (개정안과 같음)

시설의 위치, 면
적, 사용기간 및 기
타사용 조건등을
정하여 지정한다.

제76조 (관리부과금
의 징수) ①시장은
도매시장시설을 사
용하는 자에 대하
여 전기·가스·상
하수도·냉난방·
청소비 기타 시설
사용에 따른 부과
금(이하 “관리
비”라 한다)을 매
월 징수한다.

②제62조, 제63조
및 제65조의 규정
에 의한 사용료와
제1항에 의한 관리
비 징수를 위하여
시장은 납입기관,
납입금액, 납입장
소등을 기재하여
납기마감 7일전까
지 납입 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그 밖의 사용 조건
등-----.

제76조(관리부과금의
징수) ① -----

----- 시설
사용-----

-----.

② ----- 제63조---

----- 납입 기
관----- 납입 장
소 등----- 납
기 마감 7일 전---

-----.

제76조(관리부과금의
징수) ① (개정안
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제2항에 의한 사용료와 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경과 30일 이내에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 독촉장을 10일 이내의 기한으로 발부한다.

④ 제3항에 의한 가산금은 시장사용료, 시설사용료 체납액의 100분의 5로 하고, 기타 관리비는 관련법규 규정에 의한다.

⑤ 제3항의 독촉기한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77조 (시설변경의 금지) 도매시장법인과 기타 도매시장 시설의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

③ -----

----- 납기 경과 30일 이내-----

10일 이내-----
-----.

④ -----
----- 시
설 사용료 -----

그 밖의 관리비는
관련 법규 -----
-.

⑤ ----- 독촉기한
내-----

--.

제77조(시설변경의 금지)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개정안과 같음)

⑤ (개정안과 같음)

제77조(시설변경의 금지) (개정안과 같음)

이 시장시설의 신
축·증축·개보수
·철거등 그 형태
의 변경행위 및 용
도변경을 할 수 없
으며, 시장은 시설
사용자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을 때에는
시설사용자로 하여
금 원상회복을 명
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78조 (시설반환)
시설사용자의 사
망, 법인의 해산,
폐업, 허가의 취소
또는 기타의 사유
로 인하여 이를 사
용할 수 있는 자격
을 상실한 때에는
상속인·청산인·
대리인 또는 본인
은 시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시설
을 원상으로 회복

~~-철거 등 -----~~
변경 행위 -----

~~---- 시설 사용자-~~

~~---- 시설 사용자-~~
~~----- 원상 회복-~~

-----.

제78조(시설반환) 시
설 사용자-----

기간 내-----

-----.

제 78 조 (시 설 반 환)
(개정안과 같음)

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79조(시설사용 관
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도
매시장시설의 사용
자에 대하여 시설
의 전부 또는 일부
에 대한 사용지정
의 취소, 사용의 제
한 또는 정지 등 필
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생략)
2. 시장질서를 해
치거나 이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
정될 때
3. (생략)
4. 시설의 용도를
지정한 후의 사정
변경으로 그 사용
이 불필요하거나
부적당하게 된 때
5. 고의 또는 과실
로 인하여 시설을

제79조(시설사용 관
리) -----

----- 사용
지정-----

-----.

1. (현행과 같음)
2. 시장 질서-----

3. (현행과 같음)
4. -----
----- 사정 변
경-----

5. -----
----- 멸실,

제79조(시설사용 관
리) (개정안과 같
음)

1. (현행과 같음)
2. (개정안과 같
음)
3. (현행과 같음)
4. (개정안과 같
음)
5. (개정안과 같
음)

<p>멸실 파손하였을 때</p>	-----	
<p>6. 사용료 <u>기타</u> 납부금의 납입을 태만히 하였을 때</p>	<p>6. ---- <u>그 밖의</u> -----</p>	<p>6. (개정안과 같음)</p>
<p>7. (생략)</p>	<p>7. (현행과 같음)</p>	<p>7. (현행과 같음)</p>
<p>제82조(시설의 관리 책임) ①도매시장 법인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발하는 <u>지시처분</u>에 따라 시설을 관리하고 환경을 개선할 책임을 진다.</p>	<p>제82조(시설의 관리 책임) ① ----- ----- <u>지시 처분</u>----- ----- -----.</p>	<p>제82조(시설의 관리 책임)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시장은 보건위생상 또는 장내를 정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소, 소독, 물건의 <u>철거등</u>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② ----- ----- ----- ----- <u>철거 등</u> ----- ----- -----.</p>	<p>② (개정안과 같음)</p>
<p>제84조(도매업무의 대행)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 <u>지정취소</u> 또는 행정처분</p>	<p>제84조(도매업무의 대행) ----- ----- <u>지정 취소</u> -----</p>	<p>제84조(도매업무의 대행) (개정안과 같음)</p>

을 받았거나 기타
의 사유로 도매업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수행할 수 없다
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다른 도매시장법인
에게 도매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또는 직접 대행할
수 있다.

제85조(표준하역비의 부담) ①도매시장
법인은 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완전규격출하품(파
레트에 반입하여
경매하거나 파레트
반입 후 재분류하
여 경매하는 경우)
에 대하여는 표준
하역비를 전액 부
담하여야 하고, 이
를 출하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다.

②시장은 도매시장

- 그 밖-----

----- 도매
업무-----

-----.

제85조(표준하역비의 부담) ① -----

----- 대
해서-----

-----.

② --- 도매시장 내

제85조(표준하역비의 부담) ① (개정안
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내의 하역기계화
촉진등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에게
하역장비의 확보
및 운용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
으며 하역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생략)

제86조(평가의 실시)

① (생략)

②시장은 다음연도
의 평가대상, 평가
내용 및 평가기준
등을 정하여 평가
대상자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③시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자체평가
를 실시하여야 한
다.

④시장은 평가결과
에 따라 도매시장
법인·중도매인에
대해 시설사용면적
의 위치, 점포수 조

----- 총
진 등-----

----- 하역 장
비----- 운용

등 -----
----- 하역 장

비-----
-.

③ (현행과 같음)

제86조(평가의 실시)

① (현행과 같음)

② --- 다음 연도--
----- 평가 내용

-- 평가 기준 등---

-----.

③ -----
----- 자체 평가--

-----.

④ --- 평가 결과--

----- 시
설 사용면적-----

점포 수 -----

③ (현행과 같음)

제86조(평가의 실시)

①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
음)

③ (개정안과 같
음)

④ (개정안과 같
음)

정, 사용료 차등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생략)

⑥ 시장은 평가결과를 공고등을 통해 출하자등 도매시장의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7조(장비의 확보)

①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용기등 매매 거래에 필요한 기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이 확보 사용해야 할 장비 및 용구등 기구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수송차량, 지게차, 하역장비
3. ~ 5. (생략)

차등화 등-----
-----.

⑤ (현행과 같음)

⑥ --- 평가결과를 공고 등을 통해 출하자 등 -----

-.

제87조(장비의 확보)

① -----
----- 장비·
용기 등 매매 거래-----
-----.

② -----
----- 용구 등
-----.

1. (현행과 같음)
2. -----
하역 장비
3. ~ 5. (현행과

⑤ (현행과 같음)

⑤ (개정안과 같음)

제87조(장비의 확보)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3. ~ 5. (현행과

<p>6. 기타 경매에 필요한 각종 장비 및 용기</p>	<p>같음) 6. 그 밖에 ----- ----- --</p>	<p>같음) 6. (개정안과 같음)</p>
<p>제88조(도매시장 시설사용에 대한 지시) ①시장은 도매시장 <u>시설사용자</u>에 대해 도매시장의 출입, 시장시설의 이용, <u>운반등</u>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p> <p>②시장은 제1항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 <u>대하여</u>는 도매시장의 출입, 시설의 이용, 물품의 반·출입 및 도매시장 안의 <u>운반등</u>을 금지시킬 수 있다.</p>	<p>제88조(도매시장 시설사용에 대한 지시) ① ----- - <u>시설 사용자</u>----- ----- ----- <u>운반 등</u>----- -----.</p> <p>② ----- ----- ---- <u>대해서</u>----- ----- ----- ----- <u>운반 등</u>----- ----.</p>	<p>제88조(도매시장 시설사용에 대한 지시)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개정안과 같음)</p>
<p>제89조(환경의 유지) ①도매시장 <u>시설사용자</u>는 도매시장의 <u>환경유지</u>에 노력하</p>	<p>제89조(환경의 유지) ① ----- <u>시설 사용자</u>----- <u>환경 유지</u>-----</p>	<p>제89조(환경의 유지) ① (개정안과 같음)</p>

여야 한다.

②시장은 도매시장의 청결한 환경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사용자에 대하여 출입금지 등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0조(재해시의 물품확보) 시장은 재해가 발생하여 물품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게 물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91조(보고 및 명령)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 대하여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

-----.

② -----

----- 시설 사용자----- 출입금지 등 -----
-----.

제90조(재해시의 물품확보) -----

물품 확보-----
-----.

제91조(보고 및 명령) ① -----

업무 집행 -----
-----.

② (개정안과 같음)

제90조(재해시의 물품확보) (개정안과 같음)

제91조(보고 및 명령) ① (개정안과 같음)

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시장 법인·중도매인 기타 시설사용자에 대하여 업무처리의 개선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2조(행정처분의 기준) ①시장은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산지유통인이 법령,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이조례 또는 이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도매시장법인 지정, 중도매업의 허가, 산지유통

② -----

----- 그 밖의 시설 사용자-----
----- 개선 등 -----

-----.

제92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

----- 법,
령-----

----- 6월 이내-----

-----.

② (개정안과 같음)

제92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개정안과 같음)

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행정처분 기준은 시행규칙 제56조의 위반 행위별 처분기준에 의하며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기준중 가장 유사한 사례에 준하여 처분한다.

③ 시행규칙 제56조의 처분기준 범위 내에서 시장은 위반행위의 유형을 세분하여 처분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3조(과징금 처분) 법 제83조제1항에 의거 시장이 도매 시장법인·중도매인에게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② -----

----- 대해서는
이 기준 중 -----

-----.

③ -----
----- 범위 내-----

제93조(과징금 처분) -----

영 제36조의5-----

② (개정안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제93조(과징금 처분)
(개정안과 같음)

시행령 제36조의4
의 규정에 의한다.

제95조(불법행위 고
발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도매시장의
공정거래질서 정착
과 이용자의 편의
를 위해 도매시장
내 불법행위고발센
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불법행위고발센
터는 도매시장내
불공정거래행위와
도매시장 이용상의
불편사항을 접수·
처리한다.

제96조(권한의 위임
등) 시장은 도매시
장의 건전한 운영
과 효율적인 관리감
독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
항을 제외하고는
구미시농산물도매
시장 관리사무소의

----- .

제95조(불법행위 고
발센터의 설치) ①

----- 도
매시장 내 불법행
위 고발센터-----
----- .

② 불법행위 고발
센터는 도매시장
내 -----

----- .

제96조(권한의 위임
등) -----

----- 관리·감독-----
----- 각 호-----

----- 농식품산업과장

제95조(불법행위 고
발센터의 설치)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
음)

제96조(권한의 위임
등) (개정안과 같
음)

소장에게 권한을 위임한다. 다만, 중도매업허가 및 취소, 보조경매참가자 승인, 매매참가인 신고, 출하장 및 산지 유통인 등록 또는 취소 등의 사무는 내부 위임한다. (단서신설 2002.01.11.)

1. 이 조례중 제6조 내지 제9조의 도매시장법인의 적정수, 지정조건, 지정절차, 재지정, 제11조의 자본금 규모, 제22조의 지정취소등 도매시장법인의 관련규정

제97조(검사) 도매시장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조합등 포

--. ---- 중도매업허가-----

1. -- 조례 중 제6조부터 제9조까지

----- 지정취소 등 -----
관련 규정

제97조(검사) -----

-----조합 등 -----

1. (개정안과 같음)

제97조(검사) (개정안과 같음)

<p>함) · 매매참가인 · 산지유통인 · <u>부속 영업자</u>의 도매시장 업무와 관련된 장 부 및 재산 상태를 <u>검사</u> 할 수 있다.</p>	<p>-----<u>부</u> <u>속 영업자</u>----- ----- ----- <u>검</u> <u>사할</u> -----.</p>	<p>제98조(시행규칙) - 제98조(시행규칙) (개정안과 같음)</p>
<p>제9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u>세부시행</u>에 필요한 사항은 시 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p>	<p>제98조(시행규칙) - ----- <u>세부 시행</u>- ----- ----- -.</p>	<p>제98조(시행규칙) (개정안과 같음)</p>